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34조에 따른 조 | 법 제83조제1항 | 200만원  | 400만원 | 600만원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호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나.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3조제1항 제2호 | 200만원 | 400만원 | 600만원 |
| 다. 법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경우 | 법 제83조제1항 제3호 | 200만원 | 400만원 | 600만원 |
| 라.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3조제1항 제4호 | 200만원 | 400만원 | 800만원 |